

군포시가족센터 가족상담사 위촉 공고

군포시로부터 사)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「군포시가족센터」에서 는 함께 일할 가족상담사(위촉직)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6월 20일

군포시가족센터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위촉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
가족상담사 (위촉직)	00명	- 개인심리상담 - 부부 및 가족상담 - 이혼전·후 부부상담 등 - 미술치료 등 예술매체치료

2. 지원자격

구분	자격요건
	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가진 자 ※ 관련 전문 학회 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'가족'명시)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관련학과 :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교육학, 사회학 등 ※ 미술치료 등 예술매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결격
사유
조회

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

■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 3 제1항 각호

■ 취업제한 내용 :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

■ 법 제35조의2 제2항

1.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

3. 근무조건

구분	근무시간	보수 및 공통사항
가족담사 (위촉직)	- 월요일~금요일 중 1일 - 야간상담 가능자 (주중 15시간미만 활동)	- 센터운영지침에 의거 지급 - 추후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 결정

4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기간	2023. 6. 20.(화) ~ 7. 3.(월)	
원서접수	2023. 6. 20.(화) ~ 7. 3.(월)	서류마감 2023. 7. 3.(월) 18:00까지
면접일	2023. 7. 6. (목) 14:00 예정	면접장소: 군포시가족센터 3층 집단상담실(부곡동 1194)
최종합격자 발표	2023. 7. 7. (금)	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
상담시작일	2023. 7. 17. (월) / <u>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후 위촉확정</u>	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접수방법

-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gunpomfc@hanmail.net
- 문의 : ☎ 031-392-1814 가족지원팀

6. 응시자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[붙임 1]
- 자기소개서 1부 [자유양식]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[붙임 2]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경력증명서 각 1부 (가족상담 관련)
-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

※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

7. 기타사항

-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: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』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『관련 법 시행령 제4조(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)』에 의거 **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**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.
- ※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서류 파기(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)